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68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프로슈머’를 ‘참여형 소비자’로 순화하며, ‘에너지전환시설 및 민간전문가 인력 지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골자

- 조례안 내용 중 “프로슈머”를 “참여형 소비자”로 함(안 제2조, 제9조)
- “에너지데이터 자료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으로 함(안 제5조)
- 에너지전환시설 및 민간전문가 인력지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구를 수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중 “프로슈머”를 각각 “참여형 소비자”로 한다.

안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지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다.

안 제9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프로슈머”를 각각 “참여형 소비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프로슈머”를 각각 “참여형 소비자”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행·재정적”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에너지 프로슈머”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p> <p>10. “에너지 프로슈머 <u>중개사업</u>”이란 에너지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 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1. ~ 12.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u>참여형 소비자</u>----- ----- -----.</p> <p>10. ---- <u>참여형 소비자</u> ----- ---- <u>참여형 소비자</u> ----- ----- ----- -----.</p> <p>11. ~ 12. (현행과 같음)</p>
<p>제5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에너지데이터 자료 수집 및 분석 시스템</p> <p>3. ~ 5. (생략)</p>	<p>제5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u></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8조(유지관리) 시장은 시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u>운영현황을 제6조제4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에너지전환시설 및 민간전문가 인력지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8조(유지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다.</p>
<p>제9조(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해 다음</p>	<p>제9조(에너지 <u>참여형 소비자</u> 활성화 지원 등) ----- <u>참여형 소비자</u> -----</p>

제정안	수정안
<p>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u>프로슈머</u>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u>프로슈머</u>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3. 에너지 <u>프로슈머</u>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생략) <p>제12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자치구 등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u>행·재정적</u> 지원을 할 수 있다.</p>	<p>-----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참여형 소비자 ----- ----- 2. ----- <u>참여형 소비자</u> ----- ----- 3. ----- <u>참여형 소비자</u> ----- 4. (현행과 같음) <p>제12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행정적, 재정적</u> -----.</p>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수송·저장·전환 및 활동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7. “단독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8. “리빙랩(living lab) 사업”이란 마을공동체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시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주체가 되어 함께 실험하면서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9.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0.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1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또는 자치구, 에너지공동체 등의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절감, 효율화, 생산 관련 사업
2.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
3.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4.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지원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자치구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자치구 등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홍보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재원)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후변화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국제 연대 강화)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기술·정보 및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학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등 참여와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